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4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안 별표 2)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명선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7. 11.

다. 회 부 일 : 2024. 7.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존하는 법령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조정 등을 총괄하는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신설>	○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발전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43호)의 의결을 전제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개정안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

구 분	내 용
기금명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융자 등 금융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역량강화사업 ◦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등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자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투자 기준에 관한 사항 ◦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정한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 리	◦ 기획재정부장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라 함)은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따른 정의 조항 >

구분		주요 내용
정의	사회적 경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제3조제1호)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인권 신장,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평등한 고용기회, 국민 건강의 증진, 지역공동체 재생,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을 포괄하는 가치(제3조제2호)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업법인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업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제3조제3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제3조제4호)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제3조제5호) ○그 밖에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제3조제6호)

우리나라는 산업화 등을 통한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경제적 불평등 및 사회적 갈등·양극화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불평등 및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성장,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및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의 혁신과 확산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나타남.

개정안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

대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동 기금이 설치된다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다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²⁾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

2)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는 것이 일반적임.³⁾

이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동 기금의 재원 중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융자 등 금융지원사업 등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의 범위가 모호하여 해당되는 재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⁴⁾을 세입 재원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금으로의 전출이라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측면을 보면, 동 기금은 출연금·전입금 등의 의존 재원을 기금 재원으로 하고 있어 그 운용상 독립성 및 안정성 저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현재도

3)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기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필요

일반회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금을 신설하더라도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함에 따라 일반회계를 통한 예산지원과 사업추진방식에서의 차별화를 두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 회계·기금 사업 현황 >

(단위: 억원)

회계 구분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2024년 예산
일반회계	사회적기업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크라우드펀딩 등 지원	330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목적사업인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과 긴밀히 연계된 안정적인 특정 재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의 목적 사업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과의 연관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금 신설에 대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또한 사회적경제 관련 시장·사업 변화가 급격하지 않아 신축적 사업추진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현재 일반회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사회적경제기본법」</u>

문의처
02)6788-5152